

10 FAQ

Q1. (공통) 실업급여 수급자가 사업에 참여하여 청년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 A1. 실업급여 수급자의 경우 일경험 참여 가능 다만, 실업급여를 받는 수급기간 중 청년 지원금 지급은 불가
 - 프로젝트 유형에서 팀 활동비는 조정 ·삭감 없이 지급
 - 참여 중 실업급여 기간이 종료되면 그다음 날부터 계산하여 수당 지급

Q2. (공통) 참여청년에 대한 제재사항이 있나요?

- A2. 지침상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 청년은 청년 일경험 프로그램에서 중도 탈락(이탈)한 것으로 간주
 - ① 취업한 경우
 - ② 본인이 자발적으로 프로그램 참여 중도 포기를 신청한 경우
 - ③ 체포, 구금 등 사유로 프로그램 참여가 불가능한 경우
 - ④ 개인적 사유(경조사, 치료 등 정당한 사유 제외)로 5일 이상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지 않는 경우
 - ⑤ 반복적인 무단결석,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담당자의 요구에 특별한 사유 없이 지속적으로 불응하는 등 정상적인 프로그램 참여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⑥ 운영기관 및 참여기업 등의 사업중단·폐지 등으로 프로그램 참여가 불가능한 경우
 - ⑦ 기타 질병·사고·재난 등 참여청년 본인의 귀책 없는 사유로 인한 중도탈락(이탈)

Q3. (공통) 신청일 현재 취업 중이거나 사업자등록 중인 청년의 참여 가능여부는?

A3. 고용보험에 가입 중인 자, 계약직, 프리랜서 등의 형태로 해당 사업장에 재직하고 있는 자,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는 참여 불가

다만,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부가가치과세 표준 증명원으로 전년도 사업소득이 1200만원 이하임을 증명한 경우는 참여 가능

- 프로그램 개시일 전까지 참여 제한 사유가 해소되는 경우, 참여 가능 (증빙자료 제출 필요)
- 예외적으로 프로그램 특성상 사업자등록이 필요한 경우*는 통합지원 센터 협의 후 일경험 도중 사업자등록 허용 가능.
 - * 창직, 창업 관련 프로젝트 일경험 프로그램 등
- 일경험 프로그램 참여중 사업자등록 사실이 확인된 경우 중도탈락 처리
- 참여 신청 시 해당 내용 안내, 청년 확인서 작성 및 제출(기관별 별도작성) O4. (공통) 정부 지원사업 간 중복참여가 가능한가요?
- A4. 기본적으로 동일 시기에는 중복참여가 불가하고, 같은 연도(사업기간 기준)에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 프로그램,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에 최대 2회 참여 가능함(기업탐방 제외)
 - 단, 기업탐방형 일경험 프로그램은 참여횟수가 별도로 산정되며, 같은 연도(사업기간 기준)에 최대 2회까지 참여할 수 있음

중복사업 관련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 프로그램에 동시참여 할 수 없으며 기타 관련 사업에 관하여는 운영기관이 판단 후 시행

- Q5. (공통)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가 사업에 참여하여 청년 일경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 A5. 참여청년은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청년 일경험 프로그램 참여수당 중 1개 수당을 선택해야 하고, 지원금 중복수혜 방지를 위하여해당기관(운영기관, 고용센터 등)에 즉시 이 사실을 고지 필요

운영기관에서는 참여청년이 중복 참여자라 하더라도 청년일경험 수당을 지급함, 단, 해당 고용센터에 일경험 참여수당을 받았다는 내용을 참여청 년이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함(중복 수혜 불가능)

- Q6. (공통) 기업과 논의하는 중에 당초 사업계획서상 사전직무교육과 일경 험 프로그램 기간에서 변경된 경우 지원금 교부도 변경 가능한지?
- A6. 예산산출서 교부시 반납 금액 최소화를 위해 전 운영기관에 일괄 기준을 적용했으며, 실제로 사전직무교육 기관이 변경되더라도 통합지원 센터에 실시보고 후 추후 추가예산 교부시 차액분 지급
 - 단, 일경험 프로그램 대비 사전직무교육 기간 합리적인 선에서 설계



- Q7. (공통) 일경험 중 공휴일 인정기준이 궁금합니다.
- A7. 법정공휴일(추석 등), 사규*에 근거한 단체휴무일 등의 경우 주 25시간 미달시에도 출석으로 인정하고, 수당도 지급
 - *별도의 사규기준 제출 필수. 단, 주 5일 전체 휴무는 인정 불가(통상 2-3일 인정)
 - 단, 청년 개인별 연차나 여름휴가는 인정 불가하며,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공가 처리기준에 준거하여 진행
- 08. (공통) 사전직무교육 중 공휴일 인정기준이 궁금합니다.
- A8. 사전직무교육은 일경험 기준 준용 불가. 사전에 공휴일을 <u>제외</u>한 날로 일정을 계획하여 진행
- Q9. (인턴형) 상시근로자수 10인인 기업입니다. 청년 3인 참여 가능한가요?
- A9. 동 사업 참여청년는 시행지침상 '일경험 수련생에 대한 법적 지위 판단 과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에 근거하여 보호받아야 하며 되도록 상시근 로자 수의 30% 이하 청년 파견 필요
 - 해당 사례 발생시 반드시 통합지원센터로 사전 상의 필요. 업종, 직무별 특성에 기준하여 가능여부 판단 예정

반드시 참여기업 상시근로자 수에 정량 비례할 필요는 없으나 운영기관은 청년이 경험하고 싶은 기업, 직무를 발굴할 의무가 있음

참여기업의 직종, 직무의 특성에 따라 비율은 상이하나 참여기업의 하향 평준화를 절대적으로 지양해야 함

- Q10. (인턴형) 일경험 중 참여기업을 변경할 수 있나요?
- A10. 일경험 프로그램 중 불가. 중탈 처리 후 신규 기업으로 일경험 참여하는 개념임.

운영기관에서는 기업과 참여자가 최대한 만족할 수 있도록 참여기업과 충분히 협의하고 사전에 청년의 선호(직무적합도, 주거지 등)를 반영하여 선발 진행



- Q11. (인턴형) 주 25시간을 초과하여 운영하는 경우 기업의 지원금 추가 지급 기준은?
- All. 주 25시간 초과 운영 시 청년 지원금 지급기준 금액*에 비례하여 기업 자부담으로 청년에게 초과시간에 대한 수당을 추가 지급하여야 함 (표준계약서 체결시 명시)
 - * 예시) 주 30시간 운영시 초과 5시간에 대해 7만원 추가 지급(기업 부담) 청년수당 25/350,000=시간당 14,000 14,000*5시간=주당 추가 수당70,000
- Q12. (인턴형) 참여기업 전사적으로 유연근무제 실시할 경우 참여청년에게도 기준 적용 가능한지요?
- A12. 기업 사규 등에 공식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전사 기준에서 실시하는 경우 08시와 19시 시간 내 유연근무 가능. 단, 이 경우 기업의 사규 등을 확인하여 승인해야 하고, 참여청년에게 명확하게 안내하고 동의를 받아야 함
- Q13. (프로젝트형) 일경험 운영 시간 범위 제한은? 직무교육 주말 운영이 가능한지? 멘토링을 야간 또는 주말에 진행해도 되는 지?
- A13 사전직무교육 및 일경험 운영시간은 일경험 운영시간 범위 내 운영이 원칙이며, (09시~18시) 예외적인 시간 조정, 주말 및 야간 운영할 경우 통합지원센터와 미리 협의하고, 프로그램 모집 공고 시 해당내용을 명확하게 표시하여 청년에게 충분히 안내 필요.
 - 단, 프로젝트형 특성상 시간과 장소의 제약이 없이 실시될수 있으며 멘토링 또한 프로젝트형 특성상 가능
- Q14. (프로젝트형) 프로젝트형 수당 지급에 대한 출석률 기준?
- A14. 프로젝트형은 시간과 장소와 관계없이 수행함에 따라 출석 미 체크. 따라서 프로젝트 수행결과 및 중간 점검 등에 따라 매월 수당 지급
- Q15. (프로젝트형) 참여기업 중간점검을 온라인으로 해도 괜찮은가요?
- A15. 온-오프라인 무방하지만, 다만 점검에 대한 서류 명확하게 작성